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52 발의연월일: 2025. 3. 10.

발 의 자: 강선우·정준호·이재관

한병도 • 한정애 • 윤준병

서미화・김 윤・허종식

안규백ㆍ허 영ㆍ서삼석

한민수 이수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, 치료,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
하지만,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365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지원 부족 등으로 상시 운영할 수 없고,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 으므로, 이를 권역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함.

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8조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"를 "권역별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"로, "운영할 수 있다"를 "운영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인구규모, 권역 내 피해건수,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의 권역 설정,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절차, 방법,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	제18조(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
센터의 설치・운영) ① 국가와	센터의 설치·운영) ①
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	
담, 치료, 제7조의2제2항에 따	
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, 수	
사지원,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	
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	
행하기 위하여 <u>성폭력피해자통</u>	<u>권역별로 성폭력</u>
합지원센터(이하 "통합지원센	<u>피해자통합지원센터</u>
터"라 한다)를 설치· <u>운영할</u>	<u>운영하</u>
<u>수 있다</u> . <u><후단 신설></u>	여야 한다. 이 경우 인구규모,
	권역 내 피해건수, 지리적 접근
	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
	<u>하여야 한다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
	합지원센터의 권역 설정, 설치
	•운영에 필요한 절차, 방법,
	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
	<u> 령으로 정한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